



**유성규**  
성공회대 겸임교수  
공인노무사

## MSDS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

### 들어가며

노동자는 일을 하면서 다양한 화학물질과 이를 포함한 혼합물에 노출된다. 노동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(Material Safety Data Sheet, MSDS)를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MSDS대상 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에 대해 살펴본다. 다만 법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다룰 수 없으므로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확한 의무 사항은 반드시 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.

### MSDS의 의미

MSDS대상물질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,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MSDS는 노동자 건강,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MSDS대상물질에 관한 중요 정보를 담고 있는데, MSDS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아래와 같다.

-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|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|
| 2. 유해성·위험성         | 9. 물리화학적 특성     |
| 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| 10. 안정성 및 반응성   |
| 4. 응급조치요령          | 11. 독성에 관한 정보   |
| 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     |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  |
| 6.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    | 13. 폐기 시 주의사항   |
| 7. 취급 및 저장방법       | 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  |
|                    | 15. 법적규제 현황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6. 그 밖의 참고사항   |

### MSDS 게시 의무

MSDS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MSDS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        |
| 2. 작업장 내 노동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           |
| 3. 노동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|

사업주는 위의 전산장비에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춘 경우는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급노동자(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모두 포함

한다. 이하 같음.)가 그 장비를 이용하여 MSDS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1. MSDS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노동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
2. 해당 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게 MSDS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, 제품명 입력 및 MSDS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
3. 법에 따른 관리요령에 MSDS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

교육한 경우는 교육 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.

- 대상화학물질의 명칭(또는 제품명)
-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
- 취급상의 주의사항
- 적절한 보호구
-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
-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

사업주는 MSDS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사항이 포함된 MSDS대상물질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. 사업주는 관리요령을 작성할 때 MSDS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야 하며, 유해성·위험성이 유사한 MSDS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.

1. 제품명
2.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, 물리적 위험성
3.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
4. 적절한 보호구
5.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

### MSDS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의무

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MSDS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. 경고표시하는 경우는 MSDS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MSDS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·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내며, 경고표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### MSDS 교육 의무

사업주는 아래의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MSDS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. 이 교육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·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1. MSDS대상물질을 제조·사용·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노동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
2. 새로운 MSDS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
3. 유해성·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

1. 명칭: 제품명
2. 그림문자: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·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
3. 신호어: 유해·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'위험' 또는 '경고' 문구
4. 유해·위험 문구: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·위험을 알리는 문구
5. 예방조치 문구: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·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·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
6. 공급자 정보: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

사업주가 위와 같은 사유로 MSDS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교육해야 하며, 유해성·위험성이 유사한 MSDS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해 교육할 수 있다. 또한 MSDS에 관해

다만, MSDS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MSDS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, 노동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MSDS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. ☺